의안번호	제 20 호
의결 연월일	2003. 6

의 결 사 항

사천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・공제등의가입조례안

제 출 자	사 천 시 장
제출 연월일	2003. 6

사천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・공제등의가입조례안

의 안 번 호	20
------------	----

제출일자	2003. 6. 9.
제 출 자	사 천 시 장

1. 제정이유

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민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여 인감 증명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준거하여 해당 공무원을 보험 또는 공제등에 가입토록 하여, 본연의 업무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 기 위하여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제정코자 함.

2. 주요골자

가.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범위(안 제2조)

- 나. 보험의 가입, 가입최저 한도액, 보험금의 지급 등을 정함 (안 제3조 및 제4조)
- 다. 변상책임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변상토록 함(안 제5조제2항)
- 라.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관리대장 비치 관리(안 제6조제2항)

3. 법적근거: 인감증명법시행령제20조

4. 주요 토의과제 : 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발췌 : 따로붙임

나. 예산조치 : 3백만원

- 78,400원×38명=2,979,200원

- 산출기초

1인당보험료	대 상 인 원	산 출 금 액	보험가입금애(보상액)
	38명(양청사외 전읍면동출장소 민원실 근무자)		
78,400원	-16개소(양청사외14개면동출장소)×2명 =32명	2,979,200원	100,000,000원
	-2개소(사천읍, 벌용동)×3명=6명		

다. 입법예고

- 입법예고기간 : 2003. 4. 22~ 5. 12(21일간)

- 예고방법 : 신문게시(경남일보, 경남신문, 경남도민일보) 및

인터넷 게시공고

라. 의견제출 : 의견 없슴

사천시 조례 제 호

사천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 · 공제등의가입조례안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·공제등(이하 "보험"이라 한다)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인감업무담당공무원)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(변경신고 포함)업무, 인감증명발급업무,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.
- 제3조(보험의 가입) ①시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 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.
 - ②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이상으로 한다.
- 제4조(보험료의 지급) 시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.
- 제5조(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) ①시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 -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.
- 제6조(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) ①시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, 보험금액, 보험료, 보험기간,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.
 - ②시장은 별지서식에 의한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·정비하여야 하며, 보험증권 및 관계서 류를 보관·관리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]

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증보험 관리대장

일련	ふ	소	цJ	ス)	• る	日日	보험	기입	보험료			보험	계약		비	ภ
번호	7	٦	ズ	7	- C	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	금	액	工日址	(일	자	내	용		-14

[법령발췌]

사천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 · 공제등의가입조례(안)

인감증명시행령

제20조(보험·공제 등에의 가입) 증명청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직원의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(신원보증보험을 포함한다)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.

<신설 02 · 12 · 31>

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조례제정 및 가입현황

(5. 31일현재,단위:천만원)

구 분	공포	의회승인	추진중	보험금보장한도	보험금가입한도
계	12	2	6		
창원시	0			10	10
마산시			0	10	5
진주시			0	5	미가입
진해시	0			5	5
통영시	0			10	10
사천시			0	10	5
김해시	0			10	10
밀양시	0			5	5
거제시			0	5	10
양산시		0		10	미가입
의령군		0		10	10
함안군	0			10	10
창녕군	0			5	5
고성군	0			5	미가입
남해군			0	5	5
하동군			0	10	10
산청군	0			5	5
함양군	0			10	10
거창군	0			5	5
합천군	0			10	10

-보장한도 10천만원 : 11개시군

-보장한도 5천만원: 9개시군

-보험급가입 10천만원 : 9개시군

-보험금가입 5천만원: 8개시군

-미 가 입:3개시군

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 가입계획

□ 현 황

○보 험 회사명 :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(신원 보증 보험)

○보험가입일자 : 2002. 7. 5

○보험가입대상: 인감증명 담당공무원 17명(시1, 읍면동 14, 출장소 2)

○보험가입기간: 1년간(계약일로부터 1년간)

○보험계약방법: 직위포괄계약

○지 급 금 액 : 금칠십일만오천칠백원정(금715,700원)

- 산출내역

대상인원	1인당 보험료	산출금액	보험가입금액(보상액)
17명 42,100원		715,700원	50,000,000원

□ 문제점 및 대책

- 인감업무 담당자 1인만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민원실 근무 타 직원 발급 애로
- 민원실 근무 전 직원을 보험에 가입하여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부재시 발급대행
- 보상액이 낮아 인감사고 발생시 인감발급 담당자 본인 부담 가중
- 보상액을 상향 조정 하여 인감사고 발생이 인감발급 담당자 본인 부담 최소

□ 향후계획

- 인감업무담당자 및 그 대직자 포함 보험 재 가입 : 2003. 7. 4일
- 보상액 상향 조정으로 인감업무담당자 본인 부담 최소
- 보험 가입 예상액: 3백만원
 - 산출내역

1인당보험료	대 상 인 원	산출 금 액	보험가입금액 (보상액)
78,400원	38명(양청사외 전읍면동출장소 민원실 근무자) -16개소(양청사외14개면동출장소)× 2명=32명 -2개소 (사천읍, 벌용동)×3명=6명	2,979,200원	100,000,000원